#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(제정 2004. 3. 1.)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주대학교 학칙」과 「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에 따라 전주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산학협력단(이하 "협력단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이 규정은 본교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
- 2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- 3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·재정 지원
- 4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
- 5. 본교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
- 6.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
- 7. 학교기업 운영 및 관리 〈신설 2012.11.20〉
- 8.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〈신설 2012.11.20.〉
- 9. 전주대학교 수퍼스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〈신설 2017.02.24.〉
- 10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### 제2장 조직

- **제4조(행정지원실)** 협력단에는 산학협력지원실, 산학연구지원실을 두며,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0.6.17., 2015.11.1., 2018.3.1., 2019.9.1.>
- 제5조(산학협력단 교직원) ① 협력단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(이하 "단장" 이라 한다)이 임용하는 직원, 조교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협력단에서 임용하는 직원(조교, 연구원 포함)으로 하여금 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#### 제3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여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  -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산학협력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- 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- 5.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7. 교외연구비, 간접연구경비,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8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 제4장 사업단 및 학교기업

제9조(사업단) ① 협력단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제별로 사업단을 둘 수 있다.

- ② 사업단에는 1명의 단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업단은 프로젝트별로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.
- 제9조2(학교기업) ① 협력단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설치하고, 그 명칭과 사업종목 및 연계학부(과)는 [별표 제1호]에 따른다.
  - ② 각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교지 내에 둔다.
  - ③ 그 밖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1.20.]

- 제9조3(수퍼스타어린이집) ① 협력단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대표사업자로서 수퍼스타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다.
  - ② 수퍼스타어린이집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원장 및 교직원(교사, 조리원 등)을 임용한다.
  -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02.24.]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, 「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칙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정관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 제1호]

# 학교기업 현황

| 번 호 | 학교기업의 명칭      | 사업종목                     | 연계학과           | 비 | 고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1   | 전주대<br>보조공학센터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활학과<br>물리치료학과 |   |   |
|     |               |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<br>(8729) | 사회복지학과         |   |   |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계자동차공학과       |   |   |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기전자공학과        |   |   |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공학과        |   |   |

<sup>※ 2015</sup>학년도 1학기(3.1일자)부터 시행.